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1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박민규 · 서영석 · 정진욱
이학영 · 김영진 · 김용만
박지혜 · 김태년 · 안도걸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롯데카드, 인터파크, 루이비통, 아디다스, 써브웨이, 파파존스, 예스24 등 2025년 1~4월에만 3,6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또한, AI 시대 기술·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 범위가 일반 신상정보뿐 아니라 생체인식정보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제3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 출처와 목적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개인

정보 침해 피해자 다수는 피해 발생 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 외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20조, 제33조 및 제75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경우”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를 “즉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시기·방법”을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등”이라 한

다)는”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은”을 “장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등”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2호 중 “제20조제1항·제2항을”을 “제20조제1항을”로, “제1항”을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생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u>경우에도</u>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5장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u>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u>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u><단서 신설></u>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① ----- ----- ----- <u>즉시</u> ----- ----- ----- <u>다만,</u> <u>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u>

1. ~ 3.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제1항-----
-----방
법-----
-----.

④ 제1항-----

-----.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
우에 한한다.

1.·2. (생략)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
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
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

1.·2.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
-----장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의 장등”
이라 한다)는-----

-----제출하여야 하고, 영업비
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 ⑩ (생략)

⑪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 27.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장등은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등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제20조제1항을

같은 항

3. ~ 27. (현행과 같음)

③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④ · ⑤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 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 한 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	---